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09. 7. 2]

[개정 2010. 7. 23]

[개정 2014. 5.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회계감사”라 함은 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3. “결산감사”라 함은 감사원이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감사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4.5.23)
3.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7.23)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진흥원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7.23)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 ② (삭제 2010.7.23)
- ③ (삭제 2010.7.23)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7.23)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원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10.7.23)

제7조(공정성 및 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은 감사인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② 위원은 감사인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7.23)

- ② 업무관련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위원이 아닌 자가 대리하여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10.7.23)
- ③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서면의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7.23)
- ④ (삭제 2010.7.23)

제9조(후보자 모집) 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6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한 감사인을 후보자로 선정한다.(개정 2010.7.23)

- ② (삭제 2010.7.23)

제10조(제출서류)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2. 가격제안서
3. 감사수행 계획서

- 제11조(심사기준)** ① 후보자 심사는 제안서와 가격을 80:20의 비중으로 심사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필요시 발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개정 2010.7.23)
④ 가격평가는 (최저가격/제안가격) × 100 으로 한다.

제12조(감사인 선임) ① (삭제 2010.7.23)

- ②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한 최종심사결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진흥원의 감사인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개정 2010.7.23)

제12조의2(회계감사계약)(신설 2010.7.23) ① 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2조의3(감사인의 변경 등)(신설 2010.7.23) ① 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감사인이 진흥원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감사인이 진흥원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진흥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규칙 등을 위반하여 진흥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1.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진흥원은 그 내용과 개선정계획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 규칙이 정하는 감사인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회계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0.7.23)

1. 위원회 소집, 운영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감사원 규칙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09.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심사평가표

○ 후보자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수
일반부문 (30)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회계감사를 위한 핵심과약(법/제도 등) 및 수행방안 제시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10	
	유사분야 실적 경험	-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 공공기관 컨설팅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현황	10	
관리부문 (40)	품질보증 방안	- 회계감사기관의 품질보증 능력 - 회계감사 관리방법론 적정성	15	
	사업수행 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15	
	일정계획	- 세부업무 구성의 적절성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10	
지원부문 (30)	컨설팅	- 컨설팅 서비스(회계·세무·자금운용 등) 내용 적정성 - 컨설팅 서비스 방법의 적정성 - 추가 지원 서비스 사항	20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0	
합계			100	

20 . . .

위원 _____ (서명)